

「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부처 지침에 맞도록 「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여 금고지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경쟁방법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1회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재지정 가능한 조항 삭제(안 제3조제1항제2호)
-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보완
 - 지역조합(제2금융권)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및 일부 평가항목을 금융감독원의 평가항목과 일치(별표 중 제1호 및 제5호)
-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방법에 시 홈페이지를 추가(안 제8조제1항)
- 자치단체와 금고 간 협력사업 관련 조항 신설(안 제15조)
 -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은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
 -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비현금성 협력사업(물품 등)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에 따라 처리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,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
 - 「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지방재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부처 지침에 맞도록 「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여 금고지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경쟁방법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1회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재지정 가능한 조항을 삭제하고,
- 지역조합(제2금융권)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및 일부 평가항목을 금융감독원의 평가항목과 일치시켜 금고지정의 평가기준을 보완하였으며,
-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은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고,
-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비현금성 협력사업(물품 등)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함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「지방재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
안전행정부 예규인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에 맞도록
「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여
금고지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지정중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삭제하고,
금고지정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보완하여
지역조합(제2금융권)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는 등
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금고 지정 및
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개정이 적당하다고 사료됨.